

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02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024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3232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3232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대 4355.2㎡ 중 B 지분 4355.2분의 72.8710에 관하여 2020. 12.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 12. 21. 접수 제366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적극재산표 순번 32 하단에 아래와 같이 순번 33을 추가하고, 합계란 기재 금액을 661,264,246원으로 고쳐 쓴다.

33	예금채권(E은행 1,846원+AJ은행 520,000원)	521,846
----	--------------------------------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신, 판사 이준민, 판사 이미경